

---

#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 [2016년 회계연도]

---

2017. 11.



행정안전부

# III 목 차 III

<b>I .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b>	<b>1</b>
1. 기금성과분석 개요	2
2. 추진체계	4
3. 분석 방향 및 지표 개선	5
<b>II . 2015년 성과분석 결과</b>	<b>7</b>
1. 총 평	8
2. 분야별 분석결과	9
3. 우수단체 선정결과	16
<b>III . 분야별·지표별 세부분석 결과</b>	<b>19</b>
1. 기금 정비	20
2. 기금운용 건전성	26
3. 기금운용 효율성	33
<b>IV .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b>	<b>37</b>
1. 개선 권고사항	38
2. 성과분석 결과 공개	40

---

# I.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

# 1. 기금성과분석 개요

## □ 추진 목적

- 자치단체 기금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 추진 근거(지방기금법 제1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함

## □ 추진 절차(지방기금법 제14조 제2항~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 분석 계획의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에는 기금정비,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분석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시·군·구는 시·도 경우)
-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기금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 필요시 확인·점검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 □ 추진 경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06.1.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 매년 모든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실시근거 규정
- '06~'12년까지는 전체 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분석하였으나, '13년부터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 실시
  - '06~'08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 분석하였으나, '09년 이후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성과분석 실시

## □ 분석결과 활용

- 우수단체 및 성과미흡 단체에 대한 조치
  - 우수단체 포상, 미흡단체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 권고

### < 표창 및 인센티브 현황 >

- '07년 : 24개 단체(광역 4, 기초 20), 개인 18명 장관 표창,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
- '08년 : 28개 단체(광역 4, 기초 24)에 장관 표창
- '09년 : 33개 단체(광역 4, 기초 29)에 장관 표창
- '10년 : 28개 단체(광역 4, 기초 24)에 장관 표창
- '11년 : 28개 단체(광역 4, 기초 24)에 장관 표창
- '12년 : 28개 단체(광역 4, 기초 24)에 장관 표창
- '13년 : 26개 단체(광역 4, 기초 22)에 장관 표창
- '14년 : 25개 단체(광역 4, 기초 21)에 장관 표창
- '15년 : 24개 단체(광역 4, 기초 20)에 장관 표창
- '16년 : 25개 단체(광역 4, 기초 21)에 장관 표창

- 공개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
  - 자치단체별로 기금성과 분석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통합하여 공개

## 2. 추진 체계

### □ 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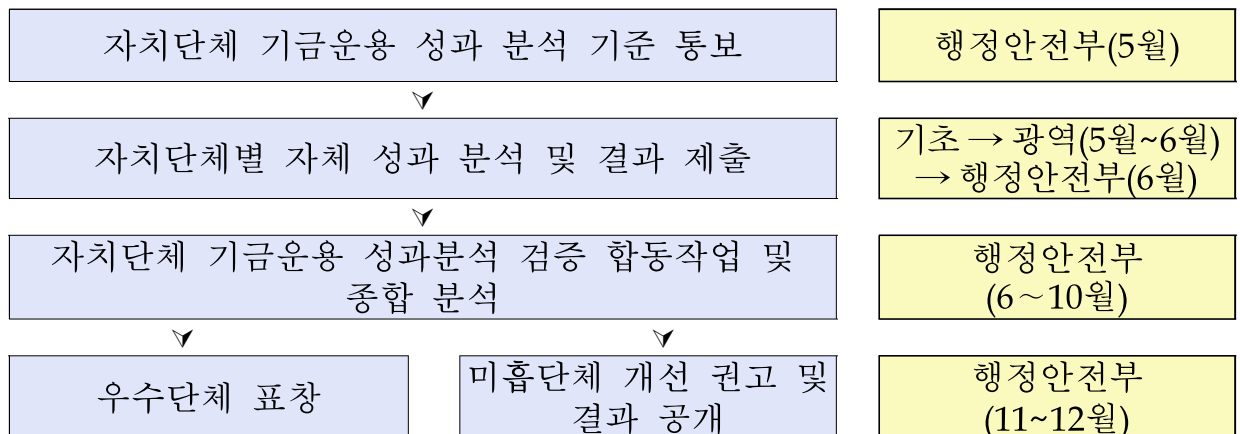
- 243개 지방자치단체 기금 2291개\*
  - \* 설치된 지 1년 미만인 기금은 제외

### □ 분석 방식

- 3개 분야(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100점), 가점(4점) 부여

분 야	지표 항목
기금 정비(40점)	기금 정비율(30점), 일몰제 적용률(10점)
기금 운용의 건전성(40점)	채권관리 적정성(15점), 타회계 의존율(5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20점)
기금 운용의 효율성(20점)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5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가 점(4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 분석절차 및 일정



### Ⅲ. 분석 방향 및 지표

#### □ 분석 방향

-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분야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민간 위원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적정성' 지표를 강화

#### □ 분석 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기금 2291개\*  
\* 설치된 지 1년 미만인 기금은 제외

#### □ 분석지표 개선

- **(배점조절)**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기금은 폐지('16.12.31.)되도록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15.7.24.)에 따라 기금정비 분야 배점 하향 및 건전성·효율성 분야 배점 상향
  - ※ 기금정비 분야 40점(10점 ↓), 건전성 분야 40점(5점 ↑), 효율성 분야 20점(5점 ↑)
- **(기금정비)** 기금 수를 기준으로 한 기금 정비율과 일몰제 적용률의 비중 축소
  - ※ '기금 정비율(기금 수)' 비중 (20→15점), '일몰제 적용률' 비중 (15→10점)
- **(건전성)** 기금 운용심의회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운영 적정성'의 비중 확대(15→20점)
- **(효율성)**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대비 집행률' 비중 확대(10→15점) 및 구간 조정
- **(제외 대상 확대)** 성질 상 지표 적용이 부적절한 일부 기금 제외
  - '기금정비율(금액 및 수)' 제외대상에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 '타회계 의존율' 제외대상에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에서 일정 비율을 의무적립하는 재정안정화·지방세발전·주민지원기금 추가
  - '계획대비 집행률' 분석대상에서 집행 예측이 곤란한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경상적 경비 비율 제외대상에 목적상 타 회계로 전출·예탁하여 사용하는 재정안정화·재정투융자·감채기금 추가
- (기타) 기금정비에 따른 가점구간이 해당연도 정비 실적에 따라 조정되도록 개선
  - ※ (기존) 1개 정비 1점, 2개 정비 2점, 3개 이상 3점(예: 3개와 10개가 동일점) → (개선) 당해연도 개별 단체의 정비실적을 감안하여 최고(3점)~최저(1점) 가점 구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IV.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 추진 경과

- 자치단체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 : '17. 6~7월
  - 광역 및 기초단체 e-호조시스템에 기금성과분석 자료 입력(6.23.)
  - 광역단체는 기초단체 입력 자료를 확인 및 조정(6.26.)
- 「자체 성과분석 총괄\*」은 광역 자치단체에서,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는 기초·광역 자치단체에서 작성
  - \* 종합적·지표별 분석결과, 가점(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통합관리기금 설치) 기초자료 작성 등
  - \*\* 기금운용 개요 및 분석결과(총평, 사업운용성과, 기금 유효성 등)
- 행정안전부 제출 : ~7월
- 기금 성과분석 입력자료 검증 합동집무 : 8.16.~ 8.18. 3일간 실시
- 행정안전부 종합 분석 : 9~11월

### □ 향후 일정

- 성과분석 결과 공개 및 우수단체 표창 : 11~12월
  - ※ 지자체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365에 공개
-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종합분석에서 권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 제출 : 11월



---

## **II. 2015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

# 1. 총 평

## ○ 기금 정비(40점)

- 기금정비율 분석기금수가 감소(1,478개 ⇒ 1,399개)하고, 일반회계 세입 총액 대비 분석대상 기금 총액 비중도 감소(3.2% ⇒ 3.0%)
- 일몰제 적용률은 전년 대비 16%p 증가(83.2% ⇒ 99.1%)

## ○ 기금운용의 건전성(40점)

- 위원회 운영 적정성(평가점수 14.1 ⇒ 14.5)과 타회계 의존율(6.9% ⇒ 4.9%)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미회수채권 비율은(4.9% ⇒ 5.9%)은 다소 악화

## ○ 기금운용의 효율성(20점)

- 계획대비 집행률(11.35점⇒ 11.85점)과 경상적 경비비율(0.29% ⇒ 0.26%) 모두 다소 개선

분 야	지표 항목		회계연도		비고
			'15년	'16년	
기금 정비 (40점)	기금 정비율	금액 기준(15점)	3.2%	3.0%	개선
		기금 수 기준(15점)	1,478개	1,399개	개선
	일몰제 적용률(10점)		83.2%	99.1%	개선
기금 운용의 건전성 (40점)	미회수채권 비율(15점)		4.9%	5.9%	악화
	타회계 의존율(5점)		6.9%	4.8%	개선
	위원회 운영 적정성(20점)		14.36/20점	14.72/20점	개선
기금 운용의 효율성 (20점)	계획대비 집행률(15점)		11.35/15점	11.85/15점	개선
	경상적 경비 비율(5점)		0.29%	0.26%	개선

※ 기금 폐지, 유사기금을 통합한 자치단체에 가점(1~3점) 부여(광역 9개, 기초 43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자치단체에 가점(1점) 부여(광역 14개, 기초 88개)

## 2. 분야별 분석결과

### 1 기금 정비(40점)

- 일반회계 세입총액 263조6,312억원, 기금정비율 분석기금\* 총액은 7조 8,862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은 3%
  - \*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기금정비율 분석기금 수는 1,399개로 평균적으로 광역 8.7개, 기초 5.54개 기금 운영
- 일몰제 적용률은 99.1%로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에 대해 일몰제 적용 중

#### ①-1 기금 정비율(금액 기준, 15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불필요한 기금 억제를 위한 지표로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

- 전국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총 263조 6,392억원, 기금 정비율 분석기금 총액은 7조 8,862억원로 일반회계 대비 기금 비율은 3%
  - (광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21조 6,242억원, 기금 정비율 분석기금 총액은 3조 9,381억원으로 비율은 3.2%
  - (기초)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2조 150억원, 기금 정비율 분석기금 총액은 3조 9,481억원으로 비율은 2.8%임

(단위 : 억원)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 기금 (C)	감채 기금 (D)	통합관 리기금 (E)	재정 안정화 기금 (F)	분석 기금 (G=B-C -D-E-F)	비율 (G/A)
광역	1,216,242	110,456	31,770	3,948	35,358	0	39,381	3.2%
기초	1,420,070	71,236	16,786	144	14,426	397	39,481	2.8%
합계	2,636,312	181,692	48,556	4,092	49,784	397	78,862	3.0%

## ①-2 기금 정비율(기금 수 기준, 15점)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비교하여 기금 수가 적은 자치단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 총 기금 수는 2,291개, 법정 의무기금 770개, 감채적립기금 30개, 통합관리 기금 90개로 기금 정비율 분석 기금 수\*는 1,399개

\* 기금정비율 분석기금 수(F) = 총 기금 수(A) - 법정 의무기금(B) - 감채적립기금(C) - 통합관리기금(D) - 재정안정화기금(E)

- 자치단체 평균 정비율 분석 기금 수는 6.1개(광역 8.7개, 기초 5.5개)

(단위 : 개)

구분	총 기금 수 (A)	법정 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기금정비율 분석기금수 (F=A-B-C-D)	
						전체	평균
광역	243	70	10	15	0	148	8.7
기초	2,048	700	20	75	2	1,251	5.5
합계	2,291	770	30	90	2	1,399	6.1

## ② 일몰제 적용률(10점)

평가대상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기금 수(법정 의무기금 제외)를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폐지를 유인하는 지표로 일몰제 적용률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 자치단체의 일몰제 규정을 둔 기금 수(A)는 1,507개, 일몰제 대상 기금 수\*(B)는 1,521개로 일몰제 적용률(A/B×100)은 99.1%임

\* 일몰제 대상기금 = 총 기금 수(2,291) - 법정 의무기금 수(770)

- (광역) 일몰제 대상 기금 176개 중 강원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이 일몰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기초) 일몰제 대상 기금 1,345개 중 14개 기금을 제외한 1,331개 기금이 일몰제 규정을 두고 있음

- '15년보다 168개 기금이 추가로 일몰제 규정을 두어 16%p 증가
- 이는 「지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16.12.31.로 정하였기 때문

(단위 : 개, %)

회계연도	구분	일몰제 적용 기금 수(A)	일몰제 대상 기금 수(B)	일몰제 적용률 (A/B)*100
'16년	광역시	175	176	99.4%
	기초	1,332	1,345	99.0%
	전국	1,507	1,521	99.1%
'15년	광역시	172	198	86.9%
	기초	1,167	1,411	82.7%
	전국	1,339	1,609	83.2%

## 2 기금 운용의 건전성(35점)

- 타회계 의존을 개선(6.9% ⇒ 4.8%),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14.1\*점 ⇒ 14.5점)는 개선, 미회수채권 비율 악화(4.9% ⇒ 5.8%)

\* '15년도 지표인 10.6/15을 20점 만점으로 환산

### ① 미회수채권 비율(15점)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여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

- 미수채권 총액(A)은 375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총액(B)은 6,357억원으로 미회수채권 비율(A/B×100)은 5.8%임
  - (광역시) 기한 도래 채권 5,133억원 중 0.68%인 35억원이 미회수
  - (기초) 기한 도래 채권 1,223억원 중 27.8%인 340억원이 미회수되고 있어 기초 자치단체의 채권관리가 광역에 비해 미흡
- '15년도(4.9%)보다 미회수채권 비율(5.8%)이 0.9%p 낮아져 지표 악화
  - 이는 기초자치체의 자활기금, 생활안정기금, 사회복지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성격의 기금의 회수율이 낮은 것에 기인

(단위 : 억원)

회계연도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B)	미회수채권 비율(%)
'16년	전국	375	6,356	5.8%
	광역시	35	5,133	0.68%
	기초	340	1,223	27.8%
'15년	전국	367	7,544	4.9%
	광역시	61	6,282	1.0%
	기초	306	1,262	24.2%

## ②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5점)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여 독자적인 기금수입 확보 유도

- 전국 자치단체 기금수입 결산총액(B)은 10조 8,761억원, 타회계 전입금(A)은 5,265억원, 타회계 의존율(A/B\*100)은 4.8%임
- '15년도(6.9%)보다 타회계 의존율(4.8%)이 2.1%p 낮아져 지표 개선

(단위 : 억원)

회계연도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타회계 의존율(%)
'16년	광역시	2,930	67,269	4.4%
	기초	2,335	41,492	5.6%
	합계	5,265	108,761	4.8%
'15년	광역시	4,721	71,843	6.6%
	기초	3,026	40,403	7.5%
	합계	7,600	150,253	6.9%

### ③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20점)

기금심의위원회 구성(민간전문가 비율),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1/2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1/3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전국) 총 2,285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1/2 이상은 1,251개(55%), ② 민간전문가 1/3 이상은 2,001개(88%), ③ 소집회의 연 2회 이상 개최는 655개(29%), ④위원 참석율 70% 이상은 1,034개(45%)임

\* 통합관리기금 관련하여 운영된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2016 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중 증가로 위원회 구성은 비교적 개선되었음에도, 아직 284개(12%)의 기금이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한 지방기금법 시행령 §7①을 위반하고 있음
- 한편, 개최 회수 및 실제 참석율은 악화 또는 개선 미비

회계 연도	구분	기금 수 (개)	평가 항목			
			①	②	③	④
'16	합계	2,285	1,251 (55%)	2,001 (88%)	655 (29%)	1,034 (45%)
	광역	243	193 (79%)	233 (96%)	92 (38%)	102 (42%)
	기초	2,042	1,058 (52%)	1,768 (87%)	563 (28%)	932 (46%)
'15	합계	2,366	1,282 (54%)	2,013 (85%)	681 (29%)	1,105 (47%)
	광역	264	199 (75%)	244 (92%)	119 (45%)	129 (49%)
	기초	2,102	1,083 (52%)	1,769 (84%)	562 (27%)	976 (46%)

### 【기금별 점수 분포 현황】

구분	분석 대상 기금						평균 점수
	합계	100점	90점	80점	70점	0점	
합계	2,285	345 (15%)	539 (24%)	701 (31%)	416 (18%)	284 (12%)	73.59
광역	243	50 (21%)	75 (31%)	85 (35%)	23 (9%)	10 (4%)	82.96
기초	2,042	295 (15%)	464 (23%)	616 (30%)	393 (19%)	274 (13%)	72.50

### 3 기금 운용의 효율성(30점)

- 기금 운용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개선
    -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평가점수의 평균값 상승(11.35점\*⇒ 11.85점)
    - 경상적 경비비율(0.3% ⇒ 0.26%)도 감소
- \* 2016년 성과분석점수(7.15/10점)를 1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 ①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5점)

당초 계획 대비 기금 집행액의 근접도를 평가하여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유인하기 위한 지표 \* 기금별로 근접도 평가

- 과소집행(계획대비 90%미만 집행) 기금 수는 증가(801개→ 828개),  
과다집행(계획대비 100%초과 집행) 기금 수는 감소(219개→178개)

회계연도	구분	집행률별 기금수 분포 (개)				
		60%미만	60~90%	90~100%	100%~140%	140%초과
'16	광역	48	54	49	13	5
	기초	355	371	539	93	67
	합계	403	425	588	106	72
'15	광역	53	44	42	22	9
	기초	335	369	564	117	71
	합계	388	413	606	139	80

#### ②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인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제외

- 경상적 경비(A)는 총 62.7억원, 기금 지출액(B)은 총 2조 4,109억원,  
경상적 경비 비율(A/B×100)은 0.26%으로 전년(0.3%)보다 개선



(단위 : 억원)

회계 연도	구분	경상적 경비 (A)	기금 지출액 (B)	경상적 경비비율(%) (A/B)*100
'16	광역	12.4	17,270	0.07%
	기초	50.3	6,839	0.73%
	합계	62.7	24,109	0.26%
'15년	광역	20	16,762	0.1%
	기초	47	6,276	0.7%
	합계	67	23,038	0.3%

## 4 가 점

### ①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가점(1점) 부여

- 90개 자치단체가 통합관리기금 설치
  - (광역) 세종, 경남을 제외한 15개 자치단체
  - (기초) 75개 자치단체

### ② 기금 통폐합 실적(1점~3점)

2016연도 동안의 기금 통폐합 실적에 따라 가점(1~3점 부여)

- 51개 자치단체가 92개 기금 통폐합
  - (광역) 9개 자치단체가 18개 정비
  - (기초) 42개 자치단체가 74개 정비

	1개(1점)	2~3개(2점)	4개 이상(3점)
합 계	31	16	4
광 역	5	3	1
기 초	26	13	3

### 3. 우수단체 선정 결과

#### □ 우수단체 선정 포상(장관상)

- 종합 점수를 단체 유형별 기준으로 총 25개 자치단체 선정
  - 광역 4개(특·광역시 2, 도 2) / 기초 21개(시 7, 군 8, 자치구 6)

단체유형	우수 단체(점수)
계(25)	광역시 2, 도 2 / 시 7 군 8, 자치구 6
광역시(2)	대전광역시(94.24), 인천광역시(93.85)
도 (2)	경상남도(91.47), 충청남도(89.34)
시 (7)	광양시(98.07), 김포시(95.25), 공주시(94.16), 진주시(94.15), 이천시(94.01), 양주시(92.98), 순천시(91.7)
군 (8)	화순군(99), 보성군(98.17), 태안군(97.33), 영동군(94.54), 금산군 (93.5), 칠곡군(93.46), 고성군(93), 강진군(92.48)
자치구 (6)	대전 서구(96.16), 부산 금정구(94.47), 부산 중구(94.36), 부산 서구(92.86), 부산 남구(91.93), 부산 강서구(91.3)

<참고> '15년 우수단체 25개(광역 4, 기초 21)

단체유형	우수 단체(점수)
계(25)	광역시 2, 도 2 / 시 5, 군 8, 자치구 8
광역시(2)	대전(97.24), 울산(92.01)
도 (2)	전북(88.95), 경남(88.06)
시 (5)	순천시(99.08), 광양시(97.35), 양주시(94.98), 김포시(94.91), 밀양시(93.23)
군 (8)	보성군(97.47), 의성군(96.75), 강진군(94.88), 태안군(94.85), 강화군(94.81), 금산군(94.50), 고성군(94.25), 무안군(94.22),
자치구 (8)	부산 강서구(95.38), 대구 북구(94.73), 대구 달서구(94.50) 부산 금정구(94.39), 부산 서구(94.18), 울산 북구(94.07) 부산 남구(93.38), 부산 영도구(92.40)

# 참고1

## 우수단체 성과분석 세부내용

### □ 광역자치단체 성과분석 결과

순위	시도	합계 (100)	정비율		일몰제 적용률 (10)	미회수 채권 비율 (15)	타회계 의존율 (5)	위원회 적정성 (20)	기금 집행율 (15)	경상 경비율 (5)	가 점
			금액 (15)	수 (15)							
1	대전	94.24	13.00	13.00	10.00	15.00	5.00	18.13	14.11	5.00	1
2	인천	93.85	13.00	15.00	10.00	15.00	5.00	15.85	13.00	5.00	2
3	울산	92.88	13.00	15.00	10.00	15.00	4.71	16.50	12.67	5.00	1
4	경남	91.47	15.00	15.00	10.00	15.00	5.00	14.80	9.67	5.00	2
5	광주	90.68	15.00	13.00	10.00	15.00	4.89	14.88	11.91	5.00	1
6	충남	89.34	11.00	15.00	10.00	15.00	5.00	14.40	11.00	4.94	3
7	서울	88.18	15.00	11.00	10.00	14.87	4.34	15.86	11.15	4.96	1
8	전북	86.58	9.00	13.00	10.00	15.00	4.83	17.00	10.75	5.00	2
9	충북	86.45	9.00	11.00	10.00	15.00	4.22	17.23	13.00	5.00	2
10	대구	84.73	9.00	11.00	10.00	15.00	4.24	17.29	10.20	5.00	3
11	부산	83.17	7.00	11.00	10.00	15.00	4.24	18.47	11.46	5.00	1
12	경기	83.04	11.00	7.00	10.00	15.00	4.54	17.33	11.17	5.00	2
13	전남	82.88	11.00	9.00	10.00	15.00	4.72	17.25	9.91	5.00	1
14	세종	80.46	9.00	13.00	10.00	13.57	4.67	16.00	9.22	5.00	0
15	제주	80.43	13.00	7.00	10.00	13.25	3.92	17.33	9.93	5.00	1
16	강원	78.35	7.00	11.00	6.00	15.00	4.89	14.83	10.64	4.99	4
17	경북	76.28	7.00	7.00	10.00	14.88	4.00	16.00	11.40	5.00	1

□ 기초자치단체 성과분석 결과

순위	단체명	합계	정비율		일몰제 적용율 (10)	미회수 채권 비율 (15)	타회계 의존율 (5)	위원회 적정성 (20)	기금 집행율 (15)	경상 경비율 (5)	가 점 (4)
			금 액(1 5)	수 (15)							
1	광양시	98.07	15	15	10.00	15.00	5.00	18.57	13.50	5.00	1
2	김포시	95.25	13	15	10.00	15.00	4.76	18.00	14.50	4.99	0
3	공주시	94.16	15	15	10.00	15.00	3.83	16.00	14.33	5.00	0
4	진주시	94.15	15	13	10.00	15.00	4.98	17.50	12.67	5.00	1
5	이천시	94.01	15	13	10.00	15.00	4.59	18.75	11.67	5.00	1
6	양주시	92.98	15	15	10.00	15.00	3.78	16.00	12.20	5.00	1
7	순천시	91.70	13	15	10.00	15.00	5.00	19.20	9.50	5.00	0
1	화순군	99.00	15	15	10.00	15.00	5.00	19.00	15.00	5.00	0
2	보성군	98.17	15	15	10.00	15.00	4.84	19.00	14.33	5.00	0
3	태안군	97.33	15	15	10.00	15.00	5.00	17.33	14.00	5.00	1
4	영동군	94.54	13	15	10.00	15.00	4.94	17.00	12.60	5.00	2
5	금산군	93.50	15	13	10.00	15.00	5.00	14.50	15.00	5.00	1
6	철곡군	93.46	15	15	10.00	15.00	4.86	13.60	15.00	5.00	0
7	고성군	93.00	15	15	10.00	15.00	5.00	17.00	11.00	5.00	0
8	강진군	92.48	13	13	10.00	15.00	4.94	20.00	11.67	4.87	0
1	대전 서구	96.16	15	15	10.00	15.00	5.00	16.29	13.00	4.87	2
2	부산 금정구	94.47	15	15	10.00	15.00	4.35	16.40	14.50	4.22	0
3	부산 중구	94.36	15	15	10.00	15.00	4.86	18.00	12.50	4.00	0
4	부산 서구	92.86	15	15	10.00	15.00	4.66	15.20	13.00	5.00	0
5	부산 남구	91.93	15	15	10.00	15.00	4.60	15.00	12.33	5.00	0
6	부산 강서구	91.30	15	15	10.00	15.00	4.13	15.50	11.67	5.00	0

---

### Ⅲ. 분야별 · 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

# 1. 기금 정비

## < 기금 정비(40점) >

기금 정비율(금액) 15점, 기금 정비율(기금 수) 15점, 일몰제 적용률 10점

### 1-1 기금 정비율(금액 기준, 15점)

불필요한 기금 억제를 위한 지표로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총 263조 6,312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7조 8,862억원, 일반회계 대비 기금 비율은 3%임

\* 분석기금 총액(F) = 기금 총액(B) - 법정의무기금(C) - 감채적립기금(D) - 통합관리기금(E)

- (광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21조 6,242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3조 9,381억원으로 비율은 3.2%로 기초(2.8%)보다 높음

- (기초)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2조 150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3조 9,481억원으로 비율은 2.8%임

(단위 : 억원)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 기금 (C)	감채 기금 (D)	통합관 리기금 (E)	재정 안정화 기금 (F)	분석 기금 (G=B-C -D-E-F)	비율 (G/A)
광역	1,216,242	110,456	31,770	3,948	35,358	0	39,381	3.2%
기초	1,420,070	71,236	16,786	144	14,426	397	39,481	2.8%
합계	2,636,312	181,692	48,556	4,092	49,784	397	78,862	3.0%

##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분석기금 총액 비율

- 3% 미만 자치단체 171개, 6% 이상 자치단체 25개

구분	합계	3% 미만	3%~4%	4%~6%	6% 이상
광역	17개	9개	3개	3개	2개
기초	226개	162개	27개	14개	23개
합계	243개	171개	30개	17개	25개

## «광역자치단체»

○ 경남(0.96%), 광주(1.02%) 등 9개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분석대상 기금 총액 비율이 3% 이하로 기금비율이 낮으나,

○ 강원은 7.07%, 경북은 6.7%로 기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단위 : 억원)

단체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분석대 상기금총 액 (B)	비율 (B/A)	단체	일반회계 수입총액 (A)	분석대 상기금총 액 (B)	비율 (B/A)
경남	75,394	562	0.75%	대구	56,599	1,875	3.31%
광주	38,497	366	0.95%	충북	38,097	1,320	3.47%
제주	39,976	904	2.26%	전남	59,450	2,397	4.03%
대전	34,054	823	2.42%	세종	12,003	647	5.39%
서울	204,828	5,336	2.61%	부산	83,313	4,566	5.48%
경기	183,670	5,136	2.80%	전북	48,529	2,783	5.73%
인천	61,820	1,843	2.98%	경북	74,347	4,845	6.52%
충남	50,824	1,526	3.00%	강원	47,400	4,282	9.03%
울산	25,979	783	3.01%	전국	1,134,782	39,994	

## 《기초자치단체》

- 충남 태안군, 전남 화순군, 경남 고성군이 법정 의무기금 등을 제외한 분석대상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등 162개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이 3% 미만으로 낮음
- 과천시(26.6%), 종로구(23.1%), 강남구(22.9%), 동래구 (15.98%), 영광군(13.4%) 광진구(12.9%), 강서구(12.5%) 등 7개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아 기금 규모가 다소 과다

(단위 : 억원)

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총액(A)	분석기금 총액 (B)	기금정비율 (B/A)×100
경기 과천시	288,035	76,461	26.55
서울 종로구	540,746	143,240	26.49
서울 강남구	388,209	89,572	23.07
부산 동래구	847,372	194,082	22.90
전남 영광군	342,349	54,710	15.98
서울 광진구	478,351	64,080	13.40
서울 강서구	464,647	60,015	12.92

### 1-2 기금 정비율(기금 수 기준, 15점)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비교하여 기금 수가 적은 자치단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법정 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총 기금 수는 2,291개, 법정 의무기금 수는 770개, 감채적립기금 수는 30개, 통합관리 기금수는 90개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399개임

\* 분석기금 수(F) = 총 기금 수(A) - 법정 의무기금(B) - 감채적립기금(C) - 통합관리기금(D)-재정안정화기금(E)



- (광역) 총 기금 수 243개 중 법정의무기금(70개)과 감채적립기금(10개), 통합관리기금(15개)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48개(평균 8.7개)
- (기초) 총 기금 수 2,048개 중 법정의무기금(700개)과 감채적립기금(20개), 통합관리기금(75개)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251개(평균 5.5개)

(단위 : 개)

구분	총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	
						전체	평균
광역	243	70	10	15	0	148	8.7
기초	2,048	700	20	75	2	1,251	5.5
합계	2,291	770	30	90	2	1,399	6.1

### 【자치단체 유형별 기금 수 분포】

구분	합계	7개 미만	7~9개	10~11개	12개 이상
광역	17개	4개	5개	5개	3개
구분	합계	4개 미만	4~6개	7~10개	10개 이상
기초	226개	61개	85개	59개	21개

### 《광역자치단체》

- 경남(2개), 울산(5개), 인천(6개), 충남(6개) 등 4개 지자체는 분석 기금 수가 7개 미만으로 우수하며,
- 경북(16개), 경기(12개), 제주(12개) 는 기금 수가 12개 이상으로 많음

(단위 : 개)

단체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단체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경남	5	2	강원	13	10
울산	12	5	충북	13	10
충남	10	6	부산	17	10
인천	13	6	대구	17	10
세종	12	8	전남	16	11
전북	12	8	경기	18	12
대전	15	8	제주	21	12
광주	16	8	경북	20	16
서울	14	9	합계	244	151

### 《기초자치단체》

- 충남 태안군(0개), 경남 고성군(0개), 전남 화성군(0개) 등 61개 지자체는 4개 미만이나, 청주시(13개), 서초구(13개) 등 10개 지자체는 10개를 초과하여 기금 수가 다소 많음

(단위 : 개)

단체 명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E)	분석 기금 수 (A-B-C-D-E)
서울 서초구	17	3	0	1	0	13
충북 청주시	22	7	1	1	0	13
서울 강북구	15	3	0	0	0	12
서울 마포구	16	3	0	1	0	12
서울 성남시	17	4	0	1	0	12
서울 성북구	13	2	0	0	0	11
서울 강서구	14	3	0	0	0	11
서울 동작구	15	3	0	1	0	11
서울 강남구	15	3	0	0	1	11
서울 강동구	15	3	0	1	0	11

## ② 일몰제 적용률(10점)

평가대상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기금 수(법정의무기금 제외)를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폐지를 유인하는 지표로 일몰제 적용률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 자치단체의 일몰제 규정을 둔 기금 수(A)는 1,507개, 분석대상 기금 수\*(B)는 1,521개로 일몰제 적용률(A/B×100)은 99.1%로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금이 일몰제 규정을 두고 있음
  - \* 분석대상기금= 총 기금 수(2,291) - 법정의무기금 수(770)
- 특히, '15년 대비 168개 기금이 추가로 일몰제 규정을 두어 전국 기준으로 15.9%p가 증가하였음
  - 이는 「지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16.12.31.로 정하였기 때문

### 《광역자치단체》

- 강원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이 일몰제를 적용

### 《기초자치단체》

- 13개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이 일몰제를 적용

지자체	일몰제 적용기금 수(A)	일몰제 대상기금 수(B)	미적용 기금	지자체	일몰제 적용기금 수(A)	일몰제 대상기금 수(B)	미적용 기금
강원도	9	10	1	충남 홍성군	2	3	1
경기 안성시	10	11	1	전북 임실군	6	7	1
강원 화천군	9	10	1	전남 나주시	8	9	1
충북 청주시	14	15	1	전남 곡성군	2	3	1
충북 제천시	9	10	1	전남 장흥군	2	3	1
충남 논산시	6	7	1	전남 고흥군	3	4	1
충남 청양군	3	4	1	경남 남해군	2	3	1

## 2. 기금 운용의 건전성

### < 기금 운용의 건전성(35점) >

미회수채권 비율(15점),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5점),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20점)

#### 1 미회수채권 비율(15점)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여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

- 미수채권 총액(A)은 375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총액(B)은 6,357억원으로 미수채권의 비율(A/B×100)은 5.8%임
  - (광역) 미수채권 총액 35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 5,133억원으로 미수 채권율은 0.68%로 낮음
  - (기초) 미수채권 총액 340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총액 1,223억원으로 미수 채권율은 27.8%로 광역에 비해 매우 높음

(단위 : 억원)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B)	미회수율(%)		
			평균	최고	최저
전국	375	6,356	5.8%		
광역	35	5,133	0.68%	35% 제주	0% 12개
기초	340	1,223	27.8%	100% 9개	0% 26개

###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 (광역) 대전을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기한도래채권이 존재하며, 이 중 12개 지자체는 매수채권이 없음
- (기초) 124개 지자체에서 기한도래채권이 존재, 이 중 28개 지자체는 미수채권이 없으나, 76개 지자체는 미회수율 10% 이상

### 【자치단체 분포 현황】

구분	합계*	0%	0~10%	10%~50%	50~90%	90~100%	100%
합계	140개	40개	23개	8개	37개	23개	9개
광역	16개	12개	3개	1개	0개	0개	0개
기초	124개	28개	20개	7개	37개	23개	9개

\* 기한만료채권이 존재하는 지자체 수

### 《광역자치단체》

- 12개 자치단체는 미수채권이 없으며, 서울(1.4%), 경북(3.7%)은 미회수율 5% 미만으로 양호하지만, 세종(7.7%), 제주(42.8%)는 다소 높음

단체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 회수율	단체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 회수율
부산	0	127.9	0.0%	충남	0	1	0.0%
대구	0	5.7	0.0%	전북	0	1.3	0.0%
인천	0	0.8	0.0%	전남	0	120.7	0.0%
광주	0	2.5	0.0%	경남	0	328	0.0%
대전	0	0	0.0%	서울	8.4	611.3	1.4%
울산	0	2.8	0.0%	경북	20.4	559	3.7%
경기	0	2856.2	0.0%	세종	1.9	24.2	7.7%
강원	0	203	0.0%	제주	4.3	10	42.8%
충북	0	279	0.0%	합계	35	5133.7	0.7%

## 《기초자치단체》

- 기한만료채권을 보유한 124개 지자체 124개 중 절반 이상인 69개 지자체의 미회수율이 50% 이상으로 채권관리의 적정성이 미흡
  - 특히, 9개 지자체는 미회수율이 100%에 달함
    - ※ 안영시, 거창군, 청도군,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목포시, 보령시, 아산시
- 미회수율이 높은 기금은 주로 자활기금, 생활안정기금, 사회복지기금 등으로 지자체의 적극적 채권 관리 노력이 필요

## ②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5점)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여 안정적인 기금수입 확보 유도

- 전국 자치단체 기금수입 결산총액(B)은 10조 8,761억원, 타회계 전입금(A)은 5,265억원, 타회계 의존율(A/B\*100)은 4.8%임
  - (광역) 기금수입 결산총액 6조 7,269억원, 타회계 전입금 2,930억원, 타회계 의존율은 4.4%임
  - (기초) 기금수입 결산총액 4조 1,492억원, 타회계 전입금 2,335억원, 타회계 의존율은 5.6%로 광역(4.4%)보다 높음

(단위 : 억원)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타회계 의존율(%)	비고	
				최고	최저
광역	2,930	67,269	4.4%	제주 21.5%	4개 0%
기초	2,335	41,492	5.6%	곡성 34.9%	53개 0%
합계	5,265	108,761	4.8%	-	-

##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구분	합계	1% 미만	1%~5%	5%~10%	10% 이상
광역	17개	8개	4개	3개	3개
기초	2226개	20개	65개	29개	58개

### 《광역자치단체》

- 7개 자치단체는 타회계 의존율이 1%미만으로 우수하나
  - 경남(0%), 대전(0%), 인천(0%), 충남(0%), 충북(0.5%), 경기(0.6%), 강원(0.6%) 등
- 세종(19.4%), 제주(18.1%), 부산(11.2%) 등 3개 자치단체\*는 타회계 의존율이 10% 이상으로 기금 수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단위 : 억원)

광역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광역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인천	0	3,148	0.0%	서울	511	13,624	3.8%
대전	0	2,216	0.0%	전북	142	3,289	4.3%
충남	0	1,631	0.0%	경북	311	5,738	5.4%
경남	0	1,416	0.0%	울산	60	1,051	5.7%
충북	7	1,425	0.5%	대구	64	825	7.8%
경기	63	11,275	0.6%	부산	767	6,865	11.2%
강원	34	5,980	0.6%	제주	738	4,083	18.1%
광주	4	200	2.0%	세종	150	770	19.4%
전남	79	3731	2.1%	<b>합계</b>	<b>2,930</b>	<b>67,269</b>	<b>0.81%</b>

## 【기금별 분석】

- (광역) 타회계 의존율이 95% 이상인 기금은 총 3개
- (기초) 타회계 의존율이 95%이상인 기금은 총 26개, 이 중 16개는 100%

### 【타회계 의존율 95% 이상인 기금(29개)】

(단위 : 억원)

시도명	단체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 입결산 총액	타회계 의존율
서울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3,000	3,000	100
서울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7,000	7,000	100
서울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345	345	100
서울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000	1,000	100
광주	광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10	10	100
경기	포천시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5	5	100
강원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5,000	5,000	100
충남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	500	500	100
전북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24	124	100
전북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1,200	1,200	100
전남	장흥군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1,300	1,300	100
경북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00	1,000	100
경북	구미시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600	600	100
경북	경산시	주민센터건립기금	3,000	3,000	100
경남	통영시	관광진흥기금	1,700	1,700	100
경남	의령군	투자유치진흥기금	500	500	100
서울	양천구	장학기금	2,000	2,003	99.85
경북	본청	에너지사업육성기금	5,000	5,021	99.58
서울	강서구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200	201	99.50
충남	청양군	체육진흥기금	2,601	2,616	99.43
경기	본청	주거복지기금	2,000	2,016	99.21
충남	서산시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00	504	99.21
경남	합천군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2,500	2,521	99.17
충북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73	74	98.65
경기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1,000	1,021	97.94
경기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100	103	97.09
충북	본청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516	96.90
서울	송파구	옥외광고정비기금	300	313	95.85
경기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300	314	95.54



### 3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기금심의위원회 구성(민간전문가 비율),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30% 이상
-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전국) 총 2,285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251개(55%), ② 민간전문가 30% 이상은 2,001개(88%), ③ 소집회의 연 2회 이상 개최는 655개(29%), ④위원 참석율 70% 이상은 1,034개(45%)임

\* 통합관리기금 관련하여 운영된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2016 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 (광역) 총 243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93개, ② 민간전문가 30% 이상은 233개, ③ 소집회의 연 2회 이상 개최는 92개, ④ 위원 참석율 70% 이상은 102개

- (기초) 총 2,042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058개, ② 민간전문가 30% 이상은 1,768개, ③ 소집회의 연 2회 이상 개최는 563개, ④ 위원 참석율 70% 이상은 932개

구분	기금 수 (개)	평가 항목				평균 점수
		①	②	③	④	
합계	2,285	1,251 (55%)	2,001 (88%)	655 (29%)	1,034 (45%)	14.5
광역	243	193 (79%)	233 (96%)	92 (38%)	102 (42%)	16.4
기초	2,042	1,058 (52%)	1,768 (87%)	563 (28%)	932 (46%)	14.37

### 【기금별 점수 현황】

- (광역) 총 243개 기금 중 10개가 모든 평가항목에서 미흡하므로 위원회 운영 개선 조치 필요
- (기초) 총 2,042개 기금 중 274개가 모든 평가항목에서 미흡하므로 개선 조치가 필요

구분	분석 대상 기금					
	합계	100점	90점	80점	70점	0점
합계	2,285	345 (15%)	539 (24%)	701 (31%)	416 (18%)	284 (12%)
광역	243	50 (21%)	75 (31%)	85 (35%)	23 (9%)	10 (4%)
기초	2,042	295 (14%)	464 (23%)	616 (30%)	393 (19%)	274 (14%)

### 【위원회 운영 지자체별 분석】

- (광역) 총 17개 지자체 중 2개 자치단체(부산, 대전) 위원회 적정성(20점)에서 18점이상, 4개 지자체(충남, 경남, 강원, 광주)는 15점 미만
- (기초) 총 243개 기금 중 26개가 위원회 적정성(20점)에서 18점 이상, 107개가 15점 미만

구분	15점 미만	16~17점	18점 이상
광역	4	11	2
기초	107	93	26
합계	111	104	28

### 3. 기금 운용의 효율성

#### < 기금 운용의 효율성(20점) >

계획대비 기금 집행율(15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 ①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5점)

당초 계획 대비 기금 집행액의 근접도를 평가하여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유인하기 위한 지표 \* 기금별로 근접도 평가

- 기금 집행액(A)은 총 2조 228억원, 당초계획 사업비(B)는 2조 6,432억원, 집행률(A/B×100)은 76.5%임
  - (광역) 기금 집행액 1조 5,192억원, 당초계획 사업비 1조 9,187억원으로 전체금액 대비 집행률 79.7%
  - (기초) 기금 집행액 5,036억원, 당초계획 사업비 7,245억원으로 전체금액 대비 집행률은 69.5%로 광역(79.7%)보다 낮음

구분	기금 집행액 (A)	당초 계획 사업비(B)	집행률 (A/B)*100	점수 평균
광역	15,192	19,187	79.7%	11.51
기초	5,036	7,245	69.5%	11.58
합계	20,228	26,432	76.5%	11.55

#### «광역자치단체»

-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우수한 단체는 대전(14.1점), 충북(13점), 인천(13점) 등 2개 자치단체로 13점 이상으로 계획에 충실하나,

- 세종(9.2점), 경남(9.7점), 전남(9.9점) 제주(9.9점) 등 4개 자치단체는 10점 미만으로 미흡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

-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우수한 단체는 전남 화순군, 경기도 시흥시, 충북 진천군, 충남 금산군, 경북 칠곡군, 강원도 동해시 전남 구례군 등 7개 자치단체(15점)
- 전남 완도군(7점), 전남 신안군(7점), 경북 울릉군(7점), 경북 청도군(7.8점), 전남 진도군(8.33점), 경북 청송군(9점), 경북 영덕군(9점), 전남 영광군(9.33점), 예천군(9.4점), 경남 함양군(9.4점) 등 12개 자치단체가 10점 미만으로 미흡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계획대비 40% 미만, 160% 초과 집행한 기금】

- 광역 자치단체 : 총 169개 기금 중 33개(19.5%)
  - (과소 집행) 집행률이 40% 미만인 기금은 총 29개로, 남북교류협력기금(9개), 식품진흥기금(5개) 등 주로 상황변화에 의존하는 기금
  - (과다 집행) 집행률이 160% 초과인 기금은 총 3개로,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서울),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광주), 옥외광고정비기금(제주)임
- 기초 자치단체 : 총 1425개 기금 중 253개(17.7%)
  - (과소 집행) 집행률이 40% 미만인 기금은 총 210개로,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주로 융자성 기금임
  - (과다 집행) 집행률이 160% 초과인 기금은 총 53개임

## ② 경상적 경비 비율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인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제외

- 경상적 경비(A)는 총 62.7억원, 기금 지출액(B)은 총 2조 4,109억원, 경상적 경비 비율(A/B×100)은 0.26%임
  - (광역) 경상적 경비는 12.4억원, 기금 지출액은 1조 7,270억원, 경상적 경비 비율은 0.07%임
  - (기초) 경상적 경비는 50.3억원, 기금 지출액은 6,839억원, 경상적 경비 비율은 0.73%로 광역(0.07%)보다 높음
- 경상적 경비 비율은 광역(0.07%), 기초 자치단체(0.73%) 모두 낮아 전반적으로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

(단위 : 억원)

구분	경상적 경비 (A)	기금 지출액 (B)	경상적 경비비율(%) (A/B)*100	기금 수	점수 평균
광역	12.4	17,270	0.07%	194	4.99
기초	50.3	6,839	0.73%	1,597	4.93
합계	62.7	24,109	0.26%	1,791	4.94

### 【기금 수 분포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0%	0%~0.5%	0.5%~3%	3~10%	10~100%	100%
광역	194	176	10	6	1	1	0
기초	1,596	1,523	7	6	15	40	6
합계	1,790	1,699	17	12	16	41	6

## «광역자치단체»

- 대구, 인천, 경기, 충북 등 11개 자치단체는 경상적 경비 지출이 없으며,
- 충남(0.9%), 서울(0.2%), 부산(0.1%) 등 6개 자치단체도 경상적 경비 비율이 1% 이하로 매우 낮음

## «기초자치단체»

- 185개 지자체가 경상적 경비 비율을 1%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 9개 지자체의 경상적 경비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경상적 경비 비율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 대전 유성구(24.1%), 부산 중구(20%), 광주 광산구(20%), 광주 서구(19.1%), 부산 금정구(15.6%), 서울 서초구(13%), 경남 거제시 (11.2%), 전북 김제시 (11.1%), 경남 함안군(10.7%)

---

## IV.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

# 1. 개선 권고사항

## □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의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제3항)
  - 성과분석 지표별로 미흡 단체에 대해 기금별 개선조치 권고

## □ 권고 내용

### ① 기금 정비율

-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총액\*의 비율이 높아 기금정비율(금액 기준) 상위 80% 미만 자치단체(광역 3개, 기초 44개)
  - 과다 조성된 기금 총액 감소 등 정비 필요
  - ※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총액 비율 : 광역 6.7% 이상, 기초 3.69% 이상
  - \* 법정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기금 수\*가 자치단체 평균(광역 8.7개, 기초 5.54개) 이상인 단체(광역 9개, 기초 106개)
  - 유사기금의 통합, 소규모·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추진 필요
  - \* 법정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② 일몰제 적용률

- '16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14개 기금\*\*(법정기금 제외)은 상위 법률\*에 의한 존속기한('16.12.31.) 도래로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폐지된 기금의 남은 자금 처리, 근거 조례 폐지 등 후속조치 실시
  - 만약, 해당 기금을 계속 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지된 기금의 남은 자금 등을 재원으로 새로운 기금을 설치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법률 제13428호> §7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화천군 향토인재육성장학금, 안성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임실군 체육진흥기금, 장흥군 노인복지기금,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 ③ 미회수채권 비율

- 기한 도래 채권액 중 미수채권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금 (광역 5개, 기초 108개)에 대해서는 채권회수 대책 등 수립 추진

### ④ 타 회계 의존률

-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이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인 개별 기금에 대해서는 수입구조 개선 등 추진(광역 30개, 기초 207개)

### ⑤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1/3 미만인 기금은 지방 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여 구성하고,
- 심의위원회를 연간 2회 이상 운영 및 위원 참석률 70%이상 제고

- 민간전문가 비율 30% 미만 : 광역 9개 / 기초 275개
- 위원회 연2회 미만 개최 : 광역 151개 / 기초 1,479개
- 참석률 70% 미만 : 광역 141개 / 기초 1,110개

## ⑥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 당초 계획대비 집행률이 40%를 미달한 기금(광역 29개, 기초 210개)과, 160%를 초과)한 기금(광역 3개, 기초 53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등 조치

## ⑦ 경상경비 비율

- 경상경비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기금(기초 18개)은 원인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 세출조정 또는 기금 통·폐합 등 정비 검토  
※ 성격상 사업내용이 경상경비인 경우는 제외

## 2. 성과분석 결과 공개

---

### □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지자체의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결과 및 권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 제3항)

### □ 공개 내용

- (지자체) 분석지표별 결과값을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공개하고, 각 기금별 세부분석결과 첨부
- (행안부)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지방재정365'에 게시

**(분야) 기금 정비**

**1-1. 기금 정비율(15점) : 기금 금액 기준**

개요(정의)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p>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실적</th> <th>점수</th> <th>광역</th> <th>기초</th> </tr> </thead> <tbody> <tr> <td>상위 20% 이상</td> <td>15</td> <td>3개</td> <td>45개</td> </tr> <tr> <td>상위 20%~상위 40%</td> <td>13</td> <td>4개</td> <td>46개</td> </tr> <tr> <td>상위 40%~상위 60%</td> <td>11</td> <td>3개</td> <td>45개</td> </tr> <tr> <td>상위 60%~상위 80%</td> <td>9</td> <td>4개</td> <td>45개</td> </tr> <tr> <td>상위 80%~상위 100%</td> <td>7</td> <td>3개</td> <td>45개</td> </tr> </tbody> </table> <p>※ 구간별 강제 할당</p> $\frac{\text{기금 총액(기금 조성액)}}{\text{일반회계 세입총액}} \times 100$ <p>*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p> <p>※ 일반회계 세입총액 : 2016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외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p>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45개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45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모든 기금 총액(A)	법정의무 기금 총액(B)	감채기금 총액(C)	통합관리 기금총액(D)	재정안정화기금 총액(E)	분석대상 기금 총액(A-B-C-D-E)
	자치단체명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1-2. 기금 정비율(15점) : 기금 수 기준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수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기금 수가 많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p>동종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p> <p>* 기금 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실적</th> <th>점수</th> <th>광역</th> <th>기초</th> </tr> </thead> <tbody> <tr> <td>상위 20% 이상</td> <td>15</td> <td>3개</td> <td>45개</td> </tr> <tr> <td>상위 20%~상위 40%</td> <td>13</td> <td>4개</td> <td>46개</td> </tr> <tr> <td>상위 40%~상위 60%</td> <td>11</td> <td>3개</td> <td>45개</td> </tr> <tr> <td>상위 60%~상위 80%</td> <td>9</td> <td>4개</td> <td>45개</td> </tr> <tr> <td>상위 80%~상위 100%</td> <td>7</td> <td>3개</td> <td>45개</td> </tr> </tbody> </table> <p>※ 구간별 강제 할당</p> <p>※ 기금 수는 2016년 결산기준으로 작성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p> <p>※ 자치단체는 소관 기금 수 총계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p>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45개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45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2016년 결산기준)						
	구분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E)	분석대상 기금 수 (A-B-C-D-E)
	자치 단체명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2. 일몰제 적용률(10점)

개요(정의)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운영 상 일몰제를 적용할 근거를 둬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 도모																								
해석 및 특징	일몰제를 적용한 기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운영																								
산정공식	$\frac{\text{일몰제 적용 기금수}}{\text{전체 기금 수}} \times 100(\%)$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실적</th> <th>점수</th> <th>광역</th> <th>기초</th> </tr> </thead> <tbody> <tr> <td>상위 20% 이상</td> <td>10</td> <td>3개</td> <td>45개</td> </tr> <tr> <td>상위 20%~상위 40%</td> <td>9</td> <td>4개</td> <td>46개</td> </tr> <tr> <td>상위 40%~상위 60%</td> <td>8</td> <td>3개</td> <td>45개</td> </tr> <tr> <td>상위 60%~상위 80%</td> <td>7</td> <td>4개</td> <td>45개</td> </tr> <tr> <td>상위 80%~상위 100%</td> <td>6</td> <td>3개</td> <td>45개</td> </tr> </tbody> </table> <p>※ 구간별 강제 할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제기금 수 : 법정 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li> <li>○ 법정 의무 기금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지방세발전기금 등)</li> <li>○ 법정재량 기금 :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li> <li>○ 자체기금 :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li> </ul>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이 100%가 바람직한 상태																								

제출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일몰제 적용 기금수 (A)</td> <td>전체기금수 (B)</td> <td>지표값 C=(A/B)×100</td> </tr> <tr> <td colspan="2">법정 의무 기금은 제외</td> <td></td> </tr> </table>	일몰제 적용 기금수 (A)	전체기금수 (B)	지표값 C=(A/B)×100	법정 의무 기금은 제외										
	일몰제 적용 기금수 (A)	전체기금수 (B)	지표값 C=(A/B)×100												
	법정 의무 기금은 제외														
<p>※ 아래의 양식은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기금명</th> <th>대상여부</th> <th>관련법령 및 조문</th> <th>일몰제 규정여부</th> <th>조례제개정일</th> </tr> </thead> <tbody> <tr> <td>○○기금</td> <td>○ / ×</td> <td>*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문 내용을 적시</td> <td>○ / ×</td> <td>00.00.00</td> </tr> <tr> <td>○○기금</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 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기금	○ / ×	*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문 내용을 적시	○ / ×	00.00.00	○○기금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 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기금	○ / ×	*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문 내용을 적시	○ / ×	00.00.00											
○○기금															
<p>※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p>															
검증자료	<p>※ 현장검증시 확인사항(✓)</p> <p>▶ 해당 자치단체 조례의 일몰제 규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연락처</td> <td></td> </tr> <tr> <td>작성자 (작성부서)</td> <td></td> </tr> </table>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분야) 기금 운용의 건전성

### 3. 미회수채권 비율(15점)

개요(정의)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미수채권을 통해 채권관리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 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건전성이 높음
산정공식	$100 - \left( \frac{\text{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채권 총액}}{\text{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times 100\% \right)$ <p>※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p> <p>※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p>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미수채권 총액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기금			(a)
	○○기금			(b)
	(계)			(a+b)/2
	<p>※ 기한도래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개별기금 합계의 평균값 계산시에도 제외</p> <p>※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p>			
검증자료	<p>※ <u>현장검증시 확인사항(✓)</u></p> <p>▶ 채권결산보고서</p>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4.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5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100 - \left( \frac{\text{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text{기금 수입결산 총액}} \times 100\% \right)$ <p>※ 기금 수입결산 총액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지방세발전기금·주민지원기금</p> <p>① 법률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기금          예) 재난관리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재해구호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5~0.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재산세의 10%), 지방세발전기금(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 주민지원기금(설치기관의 출연금과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p> <p>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p> <p>※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p>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 전입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기금			
	○○기금			
	계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20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전문성 제고
해석 및 특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산정공식	<p>4항목*으로 평가</p> <p>*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p> <p>※ 통합관리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p> <p>※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p> <p>※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p>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p>&lt;개별기금&gt;</p> <p>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4개면 20점, 3개면 18점, 2개면 16점, 1개면 14점, 0개면 12점으로 평가함</p> <p>※ 단, 민간위원 참여가 1/3 미만인 경우 ③,④와 관계없이 "0점"처리 &lt;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확인</th> </tr> </thead> <tbody> <tr> <td>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td> <td></td> </tr> <tr> <td>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td> <td></td> </tr> <tr> <td>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td> <td></td> </tr> <tr> <td>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점 수</td> <td></td> </tr> </tbody> </table> <p>①,②의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p> <p>③,④의 경우 서면심사는 미반영</p> <p>&lt;종합점수&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a+b)/2</td> </tr> </tbody> </table> <p>※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p>		구 분	확인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점 수		구분	점수	○○기금	(a)	○○기금	(b)	(계)	(a+b)/2
	구 분	확인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점 수																						
구분	점수																					
○○기금	(a)																					
○○기금	(b)																					
(계)	(a+b)/2																					
검증자료	<p>※ 현장검증시 확인사항(✓)</p> <p>▶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결과보고 공문 등</p>	<p>연락처</p> <p>작성자 (작성부서)</p>																				



## (분야) 기금 운용의 효율성

### 6.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15점)

개요(정의)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정책목적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해석 및 특징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산정공식	$\frac{\text{기금 지출액}}{\text{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times 100\%$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계획 대비 집행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90% ~ 100%</td> <td>15</td> </tr> <tr> <td>80% ~ 90%, 100% ~ 120%</td> <td>13</td> </tr> <tr> <td>60% ~ 80%, 120% ~ 140%</td> <td>11</td> </tr> <tr> <td>40% ~ 60%, 140% ~ 160%</td> <td>9</td> </tr> <tr> <td>40% 미만, 160% 초과</td> <td>7</td> </tr> </tbody> </table> <p>※ 구간별 강제 할당</p> <p>※ 기금 지출액 : 기금결산보고서 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과목을 의미</p> <p>※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재무활동 제외)</p> <p>※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산식에서 제외(분모, 분자 모두)</p> <p>※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p> <p>※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p>	계획 대비 집행율	점수	90% ~ 100%	15	80% ~ 90%, 100% ~ 120%	13	60% ~ 80%, 120% ~ 140%	11	40% ~ 60%, 140% ~ 160%	9	40% 미만, 160% 초과	7
계획 대비 집행율	점수												
90% ~ 100%	15												
80% ~ 90%, 100% ~ 120%	13												
60% ~ 80%, 120% ~ 140%	11												
40% ~ 60%, 140% ~ 160%	9												
40% 미만, 160% 초과	7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100%가 바람직한 상태,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간주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7.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
해석 및 특징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운용의 건정성 저하
산정공식	$100 - \left( \frac{\text{경상적 경비}}{\text{기금 총 지출액}} \times 100\% \right)$ <p>※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포함)</p> <p>※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p> <p>※ 기금 총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편성목을 의미</p> <p>※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p>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적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D)	지표값(%) 100-((C/D)×100)
		소계(A)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B)	대상기금(C=A-B)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